미세먼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콘텐츠에서는 미세먼지의 개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계획,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의 확인방법 및 행동요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1
1. 미세먼지 개관 4
1.1. 미세먼지 개념 및 위해성 4
1.1.1. 미세먼지란? 4
1.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5
1.2.1.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등 5
1.2.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7
2.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10
2.1. 미세먼지 예보 10
2.1.1. 미세먼지 예보의 개요 및 확인 10
2.1.2. 미세먼지 예보 행동요령 11
2.2. 미세먼지 경보 12
2.2.1.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및 확인 12
2.2.2. 미세먼지 경보 대응요령 14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6
3.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관 16
3.1.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16
3.2. 비상저감조치 유형 17
3.2.1. 예비저감조치 17
3.2.2. 비상저감조치 18
3.2.3. 광역비상저감조치 19
4. 미세먼지 저감대책 22
4.1. 미세먼지 저감 방안 22
4.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조정 22
4.1.2. 미세먼지 저감사업 23

1. 미세먼지 개관

1.1. 미세먼지 개념 및 위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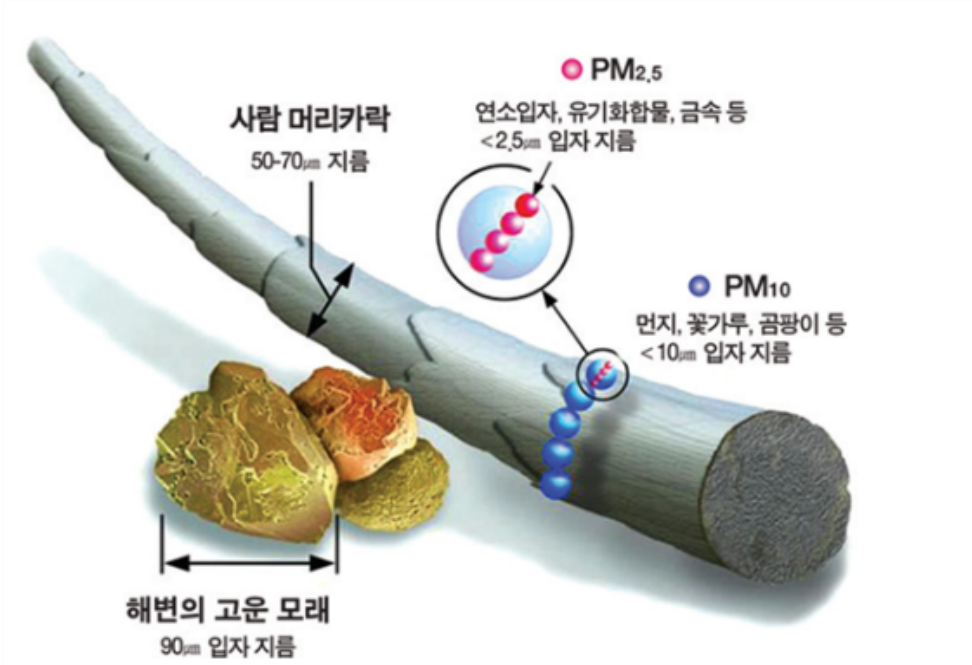
1.1.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개요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여과성 먼지 및 응축성 먼지 포함) 중 다음의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 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초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출처: 환경부,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 2쪽>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는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입자가 작습니다.

<출처: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96쪽>

미세먼지 배출원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에 의해 배출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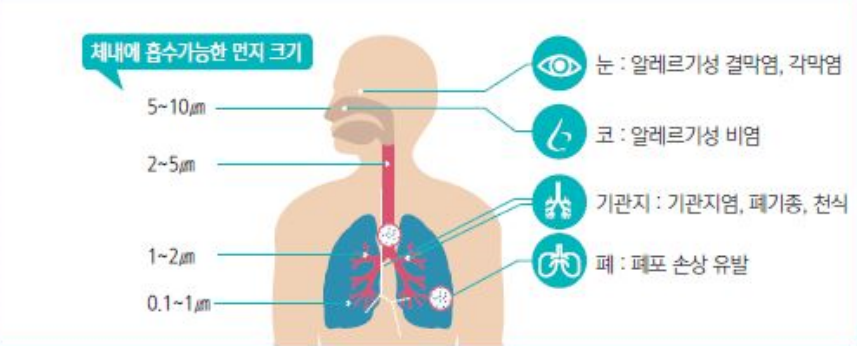
Q.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

A.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모든 오염물질을 말하며, 그 중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를 황사라고 합니다. 봄에 주로 나타나는 황사는 주요 성분이 칼슘이나 규소 등 토양성분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입자의 크기는 약 5~8㎛입니다.

<출처: 환경부,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 2쪽>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아래의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 62쪽을 참고하였습니다.



▪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 속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 들어와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 초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보다 많은 유해물질들이 흡착될 수 있고, 크기가 작아 혈관으로 침투해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의학회-질병관리청의 『미세먼지와 건강,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1.2.1.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등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정부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들은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란?**
>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 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
> 나.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
> 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
>
> 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관리
>
> 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
> 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
>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
> 아.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
> 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

시행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단서).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미세먼지 실태 및 현황 파악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장거리 이동 배출원 현황 파악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1.2.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집중관리구역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1.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8. 그 밖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해제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2.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2.1. 미세먼지 예보

2.1.1. 미세먼지 예보의 개요 및 확인

미세먼지 예보의 개요

미세먼지 예보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미세먼지 예보 횟수 및 대상지역

▪ 미세먼지 예보는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참고).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대기오염의 정도, 인구, 지형 및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및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수도권 외 권역: 강원권(강원특별자치도),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호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및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 및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참고).

물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미세먼지 (PM-10)	μg/㎥	24시간	0~30	31~80	81~150	150 초과
초미세먼지 (PM-2.5)	μg/㎥	24시간	0~15	16~35	36~75	75 초과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을 예보합니다(「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 미세먼지 예보는 PM-10과 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등급이 다를 경우 더 높은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확인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앱

▪ 미세먼지 예보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보 문자 서비스

▪ 예보 문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통해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예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보 문자 서비스는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지원 → ③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2. 미세먼지 예보 행동요령

행동요령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에 따라 행동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 그 밖에 미세먼지 예보 및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미세먼지 경보

2.2.1.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및 확인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 미세먼지 경보란?

▪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 47쪽 참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 **미세먼지 환경기준**
>
> -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 - 초미세먼지(PM-2.5) : 연간 평균치 15㎍/㎥이하, 24시간 평균치 35㎍/㎥이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

▪ 미세먼지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로 구분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7).

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4단계 위기경보기준

▪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 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 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 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합니다.

미세먼지 경보 확인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앱

▪ 미세먼지 경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보 문자 서비스

▪ 안내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101쪽 참고).

▪ 광역자치단체별 경보문자 신청방법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미세먼지 경보 대응요령

대응요령

경보 발령시 대응요령

▪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계층별로 대응요령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대상	행동요령
일반 국민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을 이용 등)
영유아·학생·어르신	·등·하교(원) 시간 조정, 휴교(원) 조치 검토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조기귀가 등)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관리 합니다.

▪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단계	대응체계	
관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 시행	
주의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 강화 -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 실시	
경계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	<예> 자율 2부제
심각		<예> 강제 2부제,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그 밖에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관

3.1.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다음의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단서).

▪ 비상저감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5.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6.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다음의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2.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및 현황
2.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참여 실적
3.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 미세먼지 농도 변화 등에 관한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3.2. 비상저감조치 유형

3.2.1. 예비저감조치

예비저감조치

> ※ 아래의 예비저감조치에 대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2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발령요건

▪ 당일 17시 예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수도권 등 광역발령을 시행하기로 협의한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의 발령여부를 결정합니다.

- 내일 및 모레 모두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모레 예보가 “매우 나쁨”으로 예측된 경우. 다만,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시·도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기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령

▪ 해당 시·도 또는 광역비상저감협의회에서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고, 발령요건을 충족하면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 수능, 설 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발령요건 충족 시 ① 내일 50㎍/㎥을 초과 + 모레 50㎍/㎥을 초과 예보 ② 모레 “매우 나쁨” 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여부	O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X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 그 밖에 예비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 아래의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3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발령요건

▪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여부를 결정합니다.

▹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당일에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매우 나쁨"수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시·도별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발령요건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 수능, 설 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구분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다음 어느 하나의 발령요건 충족 시 ① 당일 50㎍/㎥을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을 초과 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을 초과 예보 ③ 내일 75㎍/㎥을 초과 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O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여부	O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O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다만,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외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 참여 유도)

※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3. 광역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 아래의 광역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53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발령요건

▪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광역비상저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광역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발령

▪ 광역비상저감협의회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환경청은 당일 17시 10분까지 광역 발령요건 필요성을 검토하고, 광역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시·도에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요청합니다.

▹ 수능, 설 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광역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광역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요청 또는 광역권 시·도 협의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O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여부	O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O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다만,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외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 참여 유도)

※ 그 밖에 광역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미세먼지 저감대책

4.1. 미세먼지 저감 방안

4.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조정

배출시설 가동조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함)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아래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공공배출시설"이라 함)의 운영자
3. 민간배출시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함)의 운영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함)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가동률 조정 요청에 대한 통지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계절관리기간 조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조치

▪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1. 자동차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 시·도지사는 농업 잔재물 처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4.1.2. 미세먼지 저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6의3제1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 ※ **“특정경유자동차”란?**
>
> - “특정경유자동차”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본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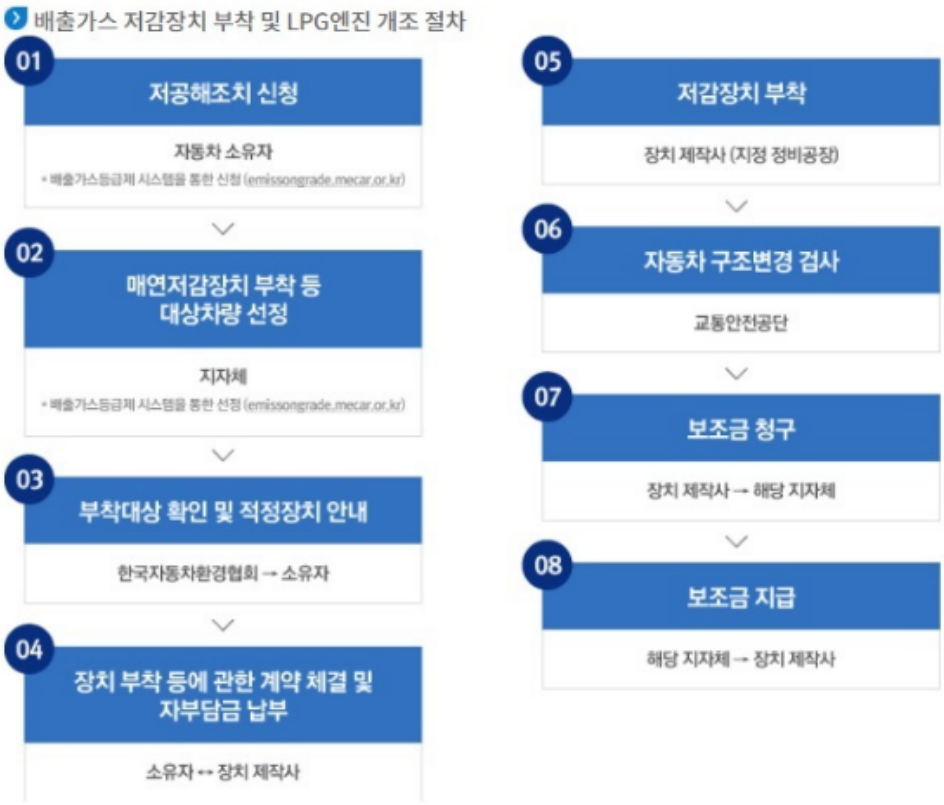
보조금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함) 및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5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장치부착비 지원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절차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 배출가스저감사업 제출서류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지급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저공해운행지역 운행제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 다만, 긴급자동차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

▸ 배출가스 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이 지난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바목은 제외)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2006년 전에 제작된 자동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5호).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중고차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질소산화물(NOx)버너 설치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전국의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분께 지원합니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효율은 높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을 지원합니다(국비 60%, 지방비 40%). 다만, 보일러 설치비용이 지원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합니다.

※ 단,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 80%를 지원합니다.

<출처: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1)>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www.mcee.go.kr)-대기마당-대기환경정보-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